

# 현금 흐름의 관리 및 제어

## 부가가치세 및 관세 관련 고려 사항들

1. FTA를 활용하는 구매 정책
2. 보세 창고 활용
3.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평가
4. 공급 및 인보이스 발행의 시기
5. 하청 유통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6. 종업원 청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7. 과징금 및 이자의 타당성 대사검증
8.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액 수령

## 관세 관련 고려 사항들

- 1. FTA를 활용하는 구매 정책 (Sourcing policy)**  
베트남은 다수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는 적격 재화는 원산지를 기반으로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구매 전략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2. 보세 창고 활용**  
세관 창고 (예: 보세 창고)는 재화가 보세창고에서 출고될 때까지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베트남 국외로 재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가 베트남 내로 운송될 때 원천징수세의 영향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3.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평가 (Valuation)**  
수입업체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종종 소급적인 리베이트 및 거래금액에 대한 조정 사항들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들은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고려 사항들

- 4. 공급 및 인보이스 발행의 시기**  
재화의 공급 / 용역의 제공 및 각 인보이스 발행 시기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전 월/ 분기의 마지막 날이 아닌, 당 월/분기의 첫째 날로 하는 경우) 현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5. 하청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종종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유통업체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 손금 인정 이슈와 부가가치세 누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계약들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이러한 손금 인정 이슈 및 부가가치세 누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6. 종업원 청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충분한 증빙자료 구비 없이 종업원들이 청구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의 기간 동안 이는 상당한 금액의 공제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청구한 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유의적인 현금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7. 과징금 및 이자의 타당성 대사검증**  
많은 기업들이 납부 세금의 대사검증 수행시 시간적 제한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정확한 산출액을 납부하거나 면밀한 검증 없이 과도한 이자와 과징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액에 대한 대사검증을 수시로 수행하는 것은 과도한 납부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8.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액 수령**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기업들은 특정 요건들 충족시 여전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제출 전 증빙 서류들을 적절하게 구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기업들이 간접세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영역을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협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Korean Business Services

**Lee Moo Yeol (이무열)**  
- Senior Manager (한국공인회계사)

+84 (0) 90 324 0069  
mooyeol.lee@pwc.com

**Jo Su Jin (조수진) - Associate**

+84 (0) 78 897 0264  
jo.sujin@pwc.com

### Customs duties

**Pham Van Vinh - Director**

+84 28 3823 0796 Ext. 1503  
pham.van.vinh@pwc.com

**Nguyen Hong Son - Director**

+84 28 3823 0796 Ext. 1527  
nguyen.hong.x.son@pwc.com

### VAT

**Annett Perschmann-Taubert - Partner**

+84 28 3824 0113  
annett.perschmann@pwc.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2020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PwC Vietnam Limited,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